



제 3 3 8 회 임 시 회
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3. 03. 10(금)

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196
제안일자	2023. 02. 24.
회부일자	2023. 02. 28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남영숙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는 현재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내 지방 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
-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(안 제3조)
-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·시행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, 해촉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~안 제9조)
-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0조)
- 인구감소지역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
규정함(안 제11조)
- 인구감소지역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
규정함(안 제12조)

4. 관련부서 협의

-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(법무혁신담당관)
-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(감사관)

5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 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 : 2023.01.26. ~ 02.01.(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-14호)
- 의견제출 : 없음

6. 검토의견

☐ 제안이유 및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저출산, 고령

화 등으로 인한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▲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▲지원사업, ▲실태조사, ▲위원회 설치 및 운영, ▲생활인구 확대 시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7조1)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

-
- 1) 제7조(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)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개년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(이하 “시·도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.
1. 시·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,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
 2. 시·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
 3.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시·군·구기본계획 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4.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및 시·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) 상호 간 협력에 관한 방안
 5. 제11조에 따른 관할 시·군·구 간 생활권 연계·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
 6. 제15조에 따른 시·도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
 7. 시·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에 관한 사항
 8. 그 밖에 시·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
- ③ 시·도지사가 시·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, 제9조에 따른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·도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시·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가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이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인구감소대응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9조2)에 따른 것입니다.

- 이는 경상북도에 적합한 인구감소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안 제5조 각 호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3)의

2) 제29조(실태조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기본계획,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, 경제·사회·문화적 여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제30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.

3) 제15조(실태조사의 범위 등)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

2.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실태

3.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

4.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

5.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(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
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
실태조사 범위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6조 및 제7조는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9조4)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안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는 각각 ▲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, ▲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, ▲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이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

4) 제9조(시·군·구 및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) 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

2. 제3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, 시·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

3.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

4.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

5.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, 지역 대표성,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

2.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3.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

③ 시·도와 시·군·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·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시·군·구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·도위원회와 시·군·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군·구위원회와 시·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규정하도록 위임한 ▲생활인구의 확대 지원(법 제15조5), ▲노후·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(법 제27조6), ▲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(시행령 제13조제2호7)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□ 종합의견

-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경상북도의 인구는 2,600,492명으로 2015년에 비해 10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는 저출생으로 인해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져 자연감소가 증가 했고,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특히, 청년층(15~39세)의 경우 2021년 전출자가 15만 1,149명인 반면에 전입자는 14만 2,933명으로 순유출 인구가 8,216명에 달해 미래세대의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-
- 5) 제15조(생활인구의 확대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.
- 6) 제27조(노후·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·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·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노후·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7) 제13조(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·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·허가·승인·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
 2. 국가의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문화·관광·체육시설의 설치·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

- 행정안전부에는 2021년 경상북도 23개 시·군 중 16개 시·군이 인구감소지역⁸⁾으로 지정되었으며, 2개 시·군이 관심지역⁹⁾으로 지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에서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을 2022년 6월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, 주도적 지역발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¹⁰⁾.
- 이에,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개발과 시행을 규정한 것입니다. 또한, 2022년~2023년 경상북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7개 사업에 848억원을 편성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,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8) 인구감소지역 : ▲안동시, ▲영주시, ▲영천시, ▲상주시, ▲문경시, ▲군위군, ▲의성군, ▲청송군, ▲영양군, ▲영덕군, ▲청도군, ▲고령군, ▲성주군, ▲봉화군, ▲울진군, ▲울릉군

9) 관 심 지 역 : ▲경주시, ▲김천시

10)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,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강화,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을 명시함

참고

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(광역계정)

□ 전략별 추진사업(37개 사업, 848억원)

청년이음 (청년에게 기회를 여는 경북)	① 이웃사촌마을 확산 : 6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이웃사촌마을 (200억원)
	② 경북살이 청년실험실 :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(10억원)
	③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: 청년 창업·주거 복합공간 조성 (20억원)
	④ 지역대학 상생협력사업 : 대학-지역 상생·발전 프로그램 개발 (10억원)
사람이음 (다시 찾고 싶은 경북)	⑤ 클라인 가르텐 조성 : 경북형 작은 정원 (40억원)
	⑥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: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 (3억원)
	⑦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: 모듈러 주택, 리모델링 등 (20억원)
	⑧ 해양레저항 개발 : 유휴어항 요·보트 계류시설 설치 등 (20억원)
세대이음 (세대 조화· 통합형 경북)	⑨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: 소규모 마을단위 역량강화 (20억원)
	⑩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 : 지역자원활용 인구활력 도모 (5억원)
	⑪ 공공산후조리원 : 모자동실, 신생아실 (10억원)
	⑫ 경북형 아이돌봄 특화사업 : 시설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공모 (30억원)
	⑬ 경북형 아동 발달지연 백신 프로젝트 : 발달지연 아동 조기진단 (5억원)
미래이음 (미래를 바라보는 경북)	⑭ 인구-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: 인구감소 정책수립 지원 데이터 플랫폼 (20억원)
	⑮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(임대형 수직농장) : 청년 농업인 육성 (50억원)
	⑯ 경북 크리에이터 육성 :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(12억원)
	⑰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: 사회적 경제기업 자본재 설치 (4억원)
	⑱ 산업단지 기반정비 신활력사업 :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 (7억원)
	⑲ 인구구조 변화대응 전략구상 : 정책 포럼 개최 및 시책 발굴 (5억원)
지역이음 (살고 싶은 공동체 경북)	광역-기초 기금 주요 연계사업 : 18개 시·군 요청사업 (18개 사업, 357억원) - 경주 : 경주시 귀농귀촌 체류시설 '웰컴팍하우스' 조성 - 상주 : 대학생, 직장인 공동거주 소규모 주거공간 조성 - 울진 :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 등